

중국 가족·종족 관행의 전개와 변천

- 중국 가족·종족 자료집의 편찬과 의의 -

박경석 · 송요후 · 손승희*

목차

- I. 중국의 가족·종족과 ‘관행연구’ : 자료집 편찬의 필요성
- II. 자료집의 내용과 구성
 - 1. 『中國家族法令資料集：清代，中華民國時期』
 - 1) 淸·民國時期的 가족법 개괄
 - 2) 자료집의 구성과 분류
 - 2. 『中國家族法令資料集：中華人民共和國』
 - 1) 중화인민공화국 ‘가족법’의 전개와 자료집의 내용
 - 2) 자료집의 구성과 분류
 - 3. 『中國宗族資料選集：族譜資料를 중심으로』
 - 1) 종족제도의 역사적 변천
 - 2) 宗族과 族譜
 - 3) 자료집의 구성과 체제
- III. 맺음말 : 자료집 편찬의 의의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교수, HK연구교수, HK연구교수

I. 중국의 가족·종족과 ‘관행연구’ : 자료집 편찬의 필요성

인천대학교 인문한국(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의 아젠다는 ‘근현대 중국의 사회·경제 관행을 조사·연구하여, 세계적 중국·화교연구자료센터를 구축하고 한국의 중국연구와 연구기반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행’은 단순한 관습이나 습관, 관례가 아니라, ‘중국인의 일상생활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無形의 사회운영시스템’을 말한다. 결국 우리의 연구는 중국사회의 다원성과 장기안정성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운영원리로서 작동했던 ‘관행’에 주목하여,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장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원인을 해명하고, 중국 사회의 내적 질서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동체의 규범원리인 ‘관행’이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법체계와 대립하고 통일되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긴장과 절충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사회 운영시스템을 유지해온 중국적 제국질서를 이해하고, 중국 역사와 사회의 통시적 변화와 지속을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다.¹⁾

특히 ‘사회관행’의 영역에서는 중국 사회를 움직이는 다양한 공동체의 내부구조와 운영질서에 주목했다. 예컨대 가족과 종족, 동향 및 동업 조직, 비밀결사와 민간신앙, 향촌조직 등이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자료집은 첫 번째 주목 대상인 가족과 종족에 관한 것이다.

전통시기 중국에서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행위가 가족을 단위

1) 아젠다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전인갑, 장정아,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 이론적 접근」,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8집, 2010.12. 참조.

로 이루어졌다. 가장을 제외한 개인은 독자적인 자기 이름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했다. 家長은 가족을 통솔하고 국가는 가장을 다스리는 구조였다. 세금이나 부역은 가장을 통해 가족에게 부과되었다. 孝를 ‘百行之本’으로 삼음으로써 혈연적인 가족 윤리가 향촌공동체에서부터 국가 전체에 이르렀고, 이는 곧 사람들의 관계와 질서를 통제하는 원리로 확대 적용되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 공동으로 책임을 졌고 가족윤리를 거스르는 범죄는 가중 처벌되었다. 혼인 행위의 주체도 혼인 당사자가 아니라 가장인 婚主였고, 약혼이 파경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할 때도 소송의 당사자는 약혼 당사자 개인이 아니라 혼주인 가장이었다.

宗族은 ‘공동의 조상을 가진 부계 혈족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수많은 同居共財의 ‘家族(家庭)’이 하나로 묶여 宗族을 이루었다. 말하자면, 종족은 동일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결합된 조직체이다. 단순한 개념 정의를 벗어나 중국의 역사와 현실에 존재하는 종족 개념의 핵심은 바로 조직력에 있다. 그 조직력은 강고한 혈연관계에 기초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祠堂, 族田, 族譜 등과 같은 실제적 기반도 가지고 있다.²⁾ 이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종족은 향촌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가권력도 종족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의지를 지역사회에 관철할 수 없었다. 종족은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사회집단이자 사회조직으로서 전통시기 중국사회에 장기간 존속해 왔다. 이런 종족제도는 西周時代의 宗法制에서 유래된 것이다. 종족제도는 시대환경에 따라 변모하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며 장구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수많은 전란과 왕조교체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종족제도는 그 견고한 본

2) 江慧, 「出世和入世:論家族和宗族的概念」, 『上海大學學報(社會科學版)』 14-4, 2007.7, 147~149쪽.

질을 간직한 채 완강한 생명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종족제도는 중국의 전통문화 속에 깊게 뿌리내려 중국인들의 사유방식과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³⁾

이상에서 보았듯이, 중국에서 가족과 종족이라는 1차적 관계를 매개로 한 혈연공동체는 중국 사회의 다원성과 장기지속의 안정성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 기반으로서 중국사회의 운영과 유지,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중국 사회의 다원성과 장기 안정성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중국 사회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종족의 다양한 양태에 접근할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장구한 역사 속에서 가족의 종족의 대척점(대립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국가권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가족·종족과 국가권력의 관계는 중국의 역사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장기지속의 안정성을 이해하는 데에 적절한 소재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사업단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 크게 두 종류 3권의 자료집을 편찬하였다. 『中國家族法令資料集 - 清代, 中華民國時期』, 『中國家族法令資料集 - 中華人民共和國』과 『中國宗族資料選集 - 族譜資料를 중심으로』가 그것이다. 세부적인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권의 『中國家族法令資料集』은 清代 이후 오늘날까지의 가족 관련 법령을 모아 정리한 자료집이다. 상술한 가족·종족과 국가의 관계는 관련 법률의 제정을 비롯한 국가의 가족·종족에 대한 조치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특히 가족법의 근간이 되는 혼인법과 상속법은 사회 전체의 가치 구조를 반영한다. 혼인을 통해 부모자식 사이의 혈연적 친족관계가 형성되고 宗祧가 계승되었

3) 馮爾康, 『18世紀以來中國家族的現代轉向』, 上海人民出版社, 2005, 214~272쪽.
참조

으며, 그 가족이 사회의 구성단위로 집적되어 견고한 국가의 기층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실질적인 통치수단은 법률의 제정과 공포였으며 이를 통해 기층사회와 개인을 통치했다. 국가의 법은 국가권력을 상징하고 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치의지에 기초한 강제적 규범이다. 그러나 그 법률의 입법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던 민간의 관행을 법체계 속에 상당정도 흡수하면서 성립된다. 해당법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의 목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국가법과 민간의 관행 사이의 괴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과 국가권력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가족 관련 법령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에 清代, 中華民國時期를 대상으로 혼인 및 상속 등 가족 관련 법령을 수집·정리하여 편찬하였고,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의 가족 관련 법령을 망라하여 별도의 자료집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中國宗族資料選集』은 다양한 族譜, 碑文 등의 자료에서 종족의 다양한 양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 모아 놓은 자료집이다. 종족의 형성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종족 성원의 보호와 발전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성을 보인다. 특히 宋代 이후 보편화된 중국의 전통 종족제도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지주계층의 신분상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몰락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색되고 발전된 것이었다. 그들은 공동 조상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조상에 대한 정기적인 제사를 지내고 종사를 건립하여 죽인들을 규율하고 족산의 확보와 족보의 찬수를 통해 종족을 확대시켰다.

중국 역사상 종족제도는 각 시대마다 통치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정권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宋

代 이후 중앙집권제 하에서 군주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어 종족은 완전히 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종족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강고한 조직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종족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부에 비협조적인 면이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종족에 대해 통제와 타협이라는 양면책을 채택하여 종족을 국가 통치의 일부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종족과 국가권력, 종족과 지역사회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때로는 협조와 타협으로 때로는 갈등과 저항의 구조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종족제도가 중국 전통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사적 중요성은 일찍이 학술분야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종족 관련 연구에서도 활발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종족 유지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祠堂, 族産, 族譜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특히 族譜는 개별 종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민간자료로서 사회사 연구자들의 각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족보는 종족의 기원과 발전, 종족의 제사제도와 종족의 조직화, 계승제도, 족산의 운영과 족인에 대한 교육, 족인에 대한 규범 등등 개별 종족의 역사와 문화뿐 아니라 당시 지역의 풍토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족보연구는 譜牒學이라는 독립적인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을 만큼 가치가 높아 지방지와 함께 종족연구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일차 사료이다. 본 자료집이 족보에 주목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족보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분량의 방대함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각각의 연구자들이 전국적 규모의 족보를 모두 수집하고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일부

를 수집하고 검토해왔을 뿐이다. 개별 족보의 양도 천차만별이어서 적게는 수십 쪽, 많게는 수천 쪽이 되기도 한다. 족보의 이러한 분산성과 개별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 자료집에서는 족보 속에 나타난 종족 관련 자료를 몇 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수집 정리했다. 이를 통해 종족 관련 자료를 포괄하고 종족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자료집 출판의 동기이자 일차적인 목적이다.

또한 본 자료집은 우리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관행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본 사업단의 주요과제는 중국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자료에 대한 수집과 현지조사를 함으로써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고 집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사회의 다원적이고 장기 안정적인 구조를 학문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사업단의 실질적인 임무이다. 현재까지도 중국사회 전반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전통과 문화의 연결고리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배태되어 온 오랜 민간의 사회경제 관행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 자료집의 편찬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 종족 연구와 밀접한 족보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역사 연구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의 활성화를 돕는 것 또한 본 자료집의 편찬 목적이다.

현재 족보와 관련된 연구성과도 날로 풍성해지고 있지만 심도 있고 광범위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단지 개별적이고 명망 있는 종족에 대한 개별연구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의 정리와 발굴, 연구 시각의 확장이나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본 자료집은 향후 종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족보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Ⅱ. 자료집의 내용과 구성

1. 『中國家族法令資料集：清代，中華民國時期』

1) 清·民國時期的 가족법 개괄

중국의 전통 법률은 당률이 제정된 이래 시대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그 기본적인 형식이나 법리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중국 전통 가족법은 입법의 중심이 어디까지나 刑律에 있었다. 民事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禮와 法을 절충하여 관습에 따라 조정했다고 할 수 있다. 청대의 실정법은 大清律例로 1646년(順治 3년) 5월 大明律을 기초로 제정된 이후 康熙, 雍正, 乾隆 3대에 걸쳐 수정하여 완성된 것이다. 특히 청대의 가족 관련 입법은 大清律例의 戶律 속에 형법과 연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족법은 대개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는 것이다. 민사 관련 법규도, 만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한다는 처벌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이러한 전통 법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서구의 법률개념과 이론이 중국에 들어온 이후이다. 淸政府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전통 관념과 법률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우선 1902년 淸政府는 沈家本과 伍廷芳을 修訂法律大臣으로 임명하고 修訂法律館을 설치했다. 이들은 각국 형법의 번역과 함께 형법의 개혁을 시도하는 한편 현행법인 大清律例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1910년 공포된 大清現行刑律이었다. 그러나 大清現行刑律은 大清律例의 기본정신이나 원칙을 기초로 국부적으로 수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大清律例의 본

4) 전통시기 가족 법률에 대해서는 張希坡, 『中國婚姻立法史』, 人民出版社, 2003, 11~13쪽. 참조.

질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가족관련 부분은 대청율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大清現行刑律이 중요한 것은 1930년 국민정부에 의해 민법에 제정되기 전까지의 현행법이었기 때문이다.

大清現行刑律이 완성되어 공포될 당시 民律草案의 제정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1911년 완성된 大清民律草案이다. 大清民律草案의 가족 관련 법은 親屬編과 繼承編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초로 근대 민법 체계를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大清民律草案의 宗旨는 현행 법제를 참작하여 풍속 기강을 바로잡고 수천 년간의 인륜을 타락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던 만큼 중국 전통사회의 예교와 민속의 흡수를 중시했다. 상속에서는 피계승인의 사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처음으로 서구적인 상속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내용상 근대적인 요소가 보이기는 하나 전통법을 근대적 형식으로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에 불과했다. 이 초안은 淸의 멸망으로 인해 정식 법전으로 채택되지 못했다.⁵⁾

신해혁명으로 성립된 중화민국 북경정부는 민국체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淸末의 大清現行刑律을 잠시 원용하였다.⁶⁾ 한편 1912년 法典編纂會를 설치하고 民律의 제정을 시작했다. 法典編纂會는 1914년 法律編查會로 개명되었다가 1918년 修訂法律館으로 재조직되었다. 수정법률관은 大清民律草案을 참고하고 각성의 民商事 습관을 조사하여 1925년부터 1926년에 걸쳐 民律草案 다섯 편을 모두 완성했다.⁷⁾ 이를 民國民律草案이라 부른다. 그러나 북경정부가 붕괴되면서 역시 초안에 머물고 말았다. 民國民律草案의 親屬編에는 養子 규정이 추가되었고 繼承編에는 가족의 특유재산을 인정하는 등 근대

5) 謝振民 編著, 『中華民國立法史 下冊』,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0, 740쪽.

6) 楊立新 点校, 『大清民律草案 民國民律草案』, 吉林人民出版社, 2002, 7쪽.

7) 肖愛樹, 『20世紀中國婚姻制度研究』, 知識產權, 2005, 145~146쪽.

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전통법적인 요소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계승편의 제2장은 宗祧繼承과 嗣子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종조계승의 전통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1926년 중국국민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婦女運動決議案」으로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 결정되었다. 즉 남녀평등의 법률 제정, 인신매매의 엄금, 결혼·이혼의 절대 자유, 일부다처제 반대, 모성 보호, 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禮敎 타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향후 혼인·가족 법률의 입법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1927년 4월 남경에서 수립된 국민정부는 입법을 위해 法制局을 설립하고 국가의 각종 중요 법률의 제정에 착수했다. 청조, 북경정부에 의해 각각 민법초안이 제정되었지만 실행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민법을 제정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法制局에서는 남녀평등의 원칙하에 1928년 親屬編과 繼承編의 기초에 착수하여 1928년 10월 초안을 마련했다. 이것이 法制局 ‘親屬法草案’과 ‘繼承法草案’이다. 그러나 이 초안들도 공포 시행되기 전에 法制局이 폐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대체로 전통적 종조계승의 폐지, 법률상 남녀의 완전 평등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곧 이어 국민정부가 行政院, 立法院, 司法院, 考試院, 監察院의 五院体制을 갖추자 이 두 초안은 입법원으로 이송되어 민법 제정의 기초가 되었다.

立法院은 1929년 1월 民法起草委員會를 설립하고 국민당의 정치이념인 삼민주의를 입법의 원칙으로 삼아 민법의 제정에 착수했다.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논의와 각지의 민사 습관조사, 북경정부 사법부의 민사습관조사 보고서 검토, 외국 법제에 대한 상세한 연구 등이 진

행되었다. 마침내 국민정부는 1930년 12월 26일 中華民國民法 親屬編과 繼承編 양편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1931년 5월 5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정식 반포 시행된 근대적 가족법이었다.

중화민국의 민법은 大清民律草案 이래 國民律草案, 法制局 民法草案으로 이어지는 성과들을 계승했고, 유럽과 일본 등 각국의 민법과 혼인가족법의 이념을 흡수했다. 내용은 개인 본위, 남녀평등, 부부 別產의 가치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가장의 권한을 보장하는 등 여전히 가족 본위의 잔재도 남아 있었다. 또한 일부일처의 원칙 하에도 축첩을 묵인하는 등의 문제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실현 가능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정부의 민간의 사회관행에 대한 타협이자 과도기적인 면모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소비에트 지역에는 1930년 이미 전국적으로 10여 곳의 농촌 ‘혁명근거지’가 건립되었다. ‘혁명근거지’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가족 법령은 1930년 3월에 공포된 「閩西第一次工農兵代表大會婚姻法」과 「湘贛蘇區婚姻條例」였다. 이들 법령은 중국공산당 중앙의 강령에 따라 혼인·이혼의 자유를 제창하고 강요된 혼인과 수절, 부모의 대리 정혼, 매매혼, 다처제 등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장질의 구성 자체가 매우 조악하여 낡은 혼인풍습으로 비난받아 온 악습들을 금지한다는 선언문에 가깝다.⁸⁾

본격적인 혼인 법령의 제정은 1931년 12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 차원에서 직접 제정한 「中華蘇維埃共和國婚姻條例」가 반포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결혼과 이혼의 완전한 자유를 천명하고 있는 등 혼인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이념이 반영되었다. 이후 이 ‘조례’

8) 韓延龍／常兆儒 編, 『中國新民主主義革命時期根据地法制文獻選編 第四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7, 797~800쪽.

를 수정 보완하여 1934년 4월 8일 정식으로 「中華蘇維埃共和國婚姻法」이 공포되었다. 내용상 혼인·이혼의 절대 자유와 등기혼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이혼 후 여성의 토지와 재산을 보호하는 조항과 紅軍의 혼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中華蘇維埃共和國婚姻法」이 시행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항일전쟁시기 ‘혁명근거지’가 ‘항일근거지’로 개편되었는데, 남녀 중 일방의 요구만으로도 이혼을 허용한다는 ‘이혼의 완전 자유’ 조항에 따라 이혼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졸지에 아내를 잃은 농촌 남성들이 ‘혁명 대오’에서 이탈할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또한 각지에 ‘항일근거지’가 수립된 후 청장년 남성들이 대거 戰線에 나감에 따라 후방에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남성들이 하던 생업을 여성들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가정에 묶어둘 필요가 커져 각 항일근거지정부는 ‘이혼의 완전 자유’ 조항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반영되었던 것이 1939년 4월 4일 공포된 「陝甘寧邊區婚姻條例」였다. 이는 ‘항일근거지’ 정부가 반포한 첫 번째 혼인 관련 법령으로, 이후 晉察冀, 晉綏, 晉冀魯豫, 山東 등의 다른 ‘항일근거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독자적인 지역성 혼인조례가 반포되었다. 대개 내용은 일부일처제 원칙이 강조되었고 축첩이나 매매혼, 부모의 강제 정혼과 같은 폐습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혼인·이혼의 자유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국민당이 제정한 民法 親屬編을 원용하여 이혼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이혼의 완전 자유’ 원칙에 제한을 가했다. 이는 항일전에 동원된 남성들의 사정을 배려한 조치였다. 또한 상속권을 가진 여성이 응분의 재산을 가지고 재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부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이는 말하자면 남성을 대신해 생업에

중사했던 여성에 대한 배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해방구’에서는 토지혁명이 실행되고 사상적 각성이 고조되면서 혼인과 이혼의 완전 자유를 요구하는 청년 여성의 열망도 더욱 강렬해졌다. 이런 기류가 반영되어 1946년 이후 제정된 「陝甘寧邊區婚姻條例」와 「修正山東省婚姻暫行條例」 등에서는 ‘항일근거지’ 시기 혼인 법령에서 ‘이혼의 완전 자유’를 제약했던 여러 조항들이 삭제되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혼인·가족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강제혼인, 매매혼, 조혼 등의 비율은 낮아지고 쌍방이 동의하는 자유혼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⁹⁾

2) 자료집의 구성과 분류

(1) 清代

본 자료집은 청대와 중화민국시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대는 총론, 가족의 형성, 가족의 계승, 가족 및 세대관계의 운영, 기타·의례의 다섯 개의 주제로 분류했다. 다만, 청대의 법률은 전통법의 형식이기 때문에 법률적 규제력을 갖는 것은 律과 그에 부수되어 있는 條例이다. 그러나 위의 주제들은 근대적인 관점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의 주제 분류형식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총론부분에서 법령 제정의 근거 법률로서 혹은 가족법을 총괄할 만한 법령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총론부분은 생략되었다. 또한 刑律人命, 刑律鬪毆, 刑律罵詈, 刑律犯姦 등은 오늘날의 刑法

9) 이상 중국공산당이 제정한 혼인 법률에 대해서는 박경석, 「20세기 전반 중국의 혼인문제를 둘러싼 법과 현실 : 1950년 ‘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의 제정과 시행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제52집, 2011.12, 151~160쪽. 참조

에 해당되고 부양·생육이라는 분류 항목에는 맞지 않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족 및 세대관계의 운영’으로 분류시켰다. ‘가족의 형성’에서는 다양한 혼인의 사례와 長子에 대한 규정들을 수록했고, ‘가족의 계승’에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 항목들을 수록했다. ‘가족 및 세대관계의 운영’에는 가족 내의 관계와 그 관계를 깨뜨리는 가족 내 범죄에 대한 항목을 수록했다. ‘기타·의례’에는 喪·葬禮의 준수나 十惡 중 惡逆, 不孝, 不睦, 不義와 관련된 항목들을 수록했다.

본 자료집의 清代 법령의 선택은 전국적인 규범성을 갖춘 법령을 기준으로 했다. 따라서 다섯 개의 주제별 분류 하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大清律例」, 「戶部則例」, 「大清會典事例」, 「大清現行刑律」, 「大清民律草案」의 다섯 부분으로 하위분류했다.

우선 大清律이 청대의 가장 기본적인 법전이므로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먼저 선정했다. 대신 大清律例는 大清律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수록하지 않았다. 大清律例는 律과 條例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자료집의 필요를 위해 條例만을 따로 추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다음에 언급할 大清會典事例가 大清律例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大清會典事例에는 律과 附律條例 및 歷年事例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歷年事例는 則例로서 歷代 法制的 沿革과 推移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대청회전사례를 포괄하고 있는 光緒會典에서 채록했다. 광서회전은 1886년(光緒 12년) 8월 6일 上諭가 내려져 1899년(광서25년) 8월에 완성되었다. 光緒會典의 편찬을 위해 1813년(嘉慶 18년)부터 1887년(光緒 13년)까지의 六部則例가 會典館으로 移管되었는데, 嘉慶 18년부터 이관되기 직전까지 수집된 戶部則例 중에서 회전사례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을 검토하여 수록했다.

이상의 자료 이외에 省例가 있는데, 이것은 省이라는 行政單位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政務先例集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에는 今後의 행정적 先例들이 채록되어 있어 매일 매일의 省政에서 참조가 될 수 있는 各省의 先例集積物이라고 할 수 있다. 則例가 吏部·戶部를 필두로 하는 중앙 각 衙門의 조례라면 省例는 지방 各省의 則例를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省例는 각성의 規則先例를 보여주는 것으로 각성의 督撫, 兩司 혹은 省內의 각급 행정관이 행정실무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법적 실무에 主眼을 두고 만들어진 책이다. 各省에는 각각 정치·경제상의 특수 사정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省例는 그러한 지방적 사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省例는 말하자면,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언젠가는 ‘永久的 章程’이 될 수 있는, 사례집 편찬을 위한 법률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清朝 전체 法制 속에서 則例와 함께 省例가 나뉠대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省例에 대한 검토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자료집의 원래 계획도 전국적 규범의 법령뿐 아니라 성례를 수록함으로써 중국의 지역적 법령의 특수성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다만 江蘇省例, 福建省例, 治浙成規, 晉政輯要 등 일부 성례를 수집하기는 했으나 중국 전역의 성례를 모두 검토하고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본 자료집을 토대로, 省例뿐 아니라 보다 하위 지방관들의 판결사례도 적극 활용하여 이후 더욱 풍부한 자료집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1910년에 반포된 大清現行刑律이다. 1912년 大清刑律草案

이 暫行刑律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면서 대청현행형률은 형법전으로서의 의미는 잃었지만 그 속에 포함된 민사법은 그대로 현행법으로 유효했다. 특히 1930년 국민정부에 의해 민법에 제정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현실생활에 적용되었던 실정법이었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수록했다.

다음은 1911년 제정된 大清民律草案이다. 이것은 전통법의 禮敎 관념과 체제에서 벗어나 근대 서구의 민사제도와 민법체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민법전의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는 의미가 있어 수록했다.

이상 5개의 중앙 차원에서 제정된 법전 중에서 주제별로 추출한 조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했다.

(2) 中華民國時期

우선 중화민국시기 가족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화민국시기의 법령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집은 蔡鴻源 主編의 『民國法規集成』(黃山書社, 1999)을 꼽을 수 있다. 『民國法規集成』은 중화민국 軍政府, 남경임시정부, 중화민국 북경정부, 남경국민정부, 소비에트공화국정부 및 혁명군거지, 항일군거지, 만주국정부, 왕정위정부 등 1912년부터 1949년까지의 각 정부가 반포했던 법률, 법령, 조례, 규칙 등 법률문건들을 총망라해놓은 법률대전이다. 총 100冊으로 이루어져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본 자료집에 실린 가족 관련법도 『民國法規集成』에서 상당 부분을 선별했다. 그 외에 특히 중화민국의 법규는 1936년 商務印書館에서 간행한 『中華民國法規大全(全5冊)』도 참고 할만하다. 大清民律草案과 國民律草案을 함께 묶어 출판한 『大清民律草案 國民律草案』(楊立新 點校,

吉林人民出版社, 2002)도 중요한 법령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중화소비에트지역의 관련법규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자료집으로는 『中國新民主主義革命時期根據地法制文獻選編(第四卷)』(韓延龍·常兆儒 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이다. 여기에는 당과 혁명근거지정부의 법제건설과정에서 제정된 각종 결의, 훈령, 지시, 법률, 법령, 조례, 장정과 더불어 입법·사법기관이 제정, 집행한 법률해석, 보고, 설명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혼인·이혼·상속 등 가족 관련 법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근대 가족문제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여성의 가정으로부터의 해방과 전통적 결혼제도의 불합리성을 타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운동문헌자료에도 상당부분의 가족관련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中國婦女運動文獻資料匯編(1918-1949)』(中國婦女管理幹部學院 編, 中國婦女出版社, 1987)이다. 婚喪禮 등 가정의 의례나 풍속개량 등과 관련되는 내용은 『中華民國史檔案資料彙編: 第5輯第1編(文化)』(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江蘇古籍出版社, 1994)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 외에는 『司法公報』나 『政府公報』 등에 입법절차 관련 소식이나 법령들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중화민국시기의 분류체계는 우선 입법의 주체가 되는 정부를 기준으로 북경정부, 국민정부, 소비에트정부 및 혁명근거지, 만주국 정부의 4부분으로 분류했다. 그 속에서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 총론, 가족의 형성, 가족의 계승, 가족 및 세대관계의 운영, 기타로 구분했다. ‘총론’에서는 가족 관련 법규가 제정되게 된 근거로서의 의미와 가족법 전제를 포괄할 수 있는 총론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선별했다. 특히 1926년의 부녀운동결의안에서는 가족문제에서 남녀평등 원칙이

제시되어 향후 가족관련 법률의 명확한 원칙을 천명했다는 의미가 있어 수록했다. ‘가족의 형성’에서는 혼인과 이혼 및 수양 등 가족의 형성 및 가족원의 구성과 관련된 법을 수록했다. ‘가족의 계승’에서는 주로 상속 관련법을 수록했고, ‘가족 및 세대관계의 운영’에서는 부양과 생육 등 가족 운영에 관한 법을 수록했다. 기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4개의 주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족의 생활과 밀접한, 가정의 婚喪禮, 합동결혼식, 戶口, 풍속개량, 遺産稅를 수록했다.

각 주제별 법령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던 일반적 규범성을 갖춘 기본 법률을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북경정부나 국민정부는 중화민국의 합법적인 정부로서 통치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했다. 즉 북경정부는 法律編查會와 修訂法律館을, 국민정부는 法制局, 立法院 등의 입법기관을 각각 설립하고 일정한 입법 절차에 의해 법을 제정했다. 그러한 입법과정이 당시 『司法公報』나 『政府公報』 혹은 신문지상에 여러 차례 언급되기는 했지만 법령으로서의 결과물은 법의 제정과 공포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북경정부시기의 民國民律草案과 국민정부시기의 法制局 民法草案과 民法이다.

그러나 당시는 扶養, 養老, 生育 등의 개념이 아직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경정부나 국민정부시기의 가족 관련 법규는 기본적으로 親屬編과 繼承編의 두 법령 속에 婚姻, 離婚, 收養, 相續(繼承), 扶養, 生育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량도 상당히 방대해서 民國民律草案은 親屬編 7장 141조, 繼承編은 7장 225조, 法制局 親屬法草案 7장 83조, 繼承法草案 8장 64조, 민법은 親屬編 7장 171조, 繼承編은 3장 88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各章의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各章의 제목을 목차에 부기해 두었다.

한편, 소비에트정부 및 혁명근거지는 정권의 특성상 각 혁명근거지 혹은 항일근거지별로 제정된 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각 지역별로 상당수의 가족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대개가 근대적인 민법전의 체제를 갖추었다기보다는 간소한 ‘條例’나 ‘暫行條例’ 형태로 제정되었다. 내용도 민사 전반을 다룬 것이 아니라 대개 혼인을 규율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1931년과 1934년에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중앙 차원에서 ‘혼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각 지역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 條例들이 꾸준히 제정되었다. 법령의 내용은 주로 강제결혼, 축첩, 聘金이나 예물, 이혼녀의 재산 박탈, 수절제도 등 ‘봉건적 악습’으로 비난 받아 온 행태들을 금지하고, 혼인 및 가정생활에서의 자유와 남녀평등을 명확히 천명하는 것이었다. 법의 종류도 法, 決議, 條例, 綱領, 判法, 解釋, 問答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법률의 체계와 시기적 순서를 고려하여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필두로 각 혁명근거지의 법령을 배치했다.

법령의 선별은 지역적으로는 전 지역을 망라하고자 했고, 일반적인 규범성을 갖춘 기본 법률 위주로 선별하고자 했다. 중화민국시기의 북경정부나 국민정부시기 법은 중앙 차원에서 제정된 일반적인 규범성을 갖춘 법령이 주류인데 반해, 중국공산당 혁명근거지는 지방정부 차원의 법, 조례 등 법령 이외에 법 해석, 문답, 보고 등 법 관련 문건들도 존재한다. 각 혁명근거지간에 수집된 법 관련 문건들의 균형을 맞추다보니 법령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 해석, 문답, 보고 등이 일부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선택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혁명근거지 명칭은 지역의 통합에 따라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일전쟁시기에는 항일근거지로 개편됨에 따라 변경되어 일정

하지 않지만, 동일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함께 묶어 배열하고자 했다. 동일지역 내에서는 법령을 시간 순서로 배열함으로써 법령 제정의 변화 추이가 드러나도록 했다.

滿洲國政府는 「親屬繼承法」이라는 명칭으로 가족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데 본 자료집에서는 편의상 1, 2편을 분리하여 ‘親屬編’과 ‘繼承編’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2. 『中國家族法令資料集：中華人民共和國』

1) 중화인민공화국 ‘가족법’의 전개와 자료집의 내용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가족법’의 제정 상황을 보면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의 공포로 ‘가족법’의 제정이 매우 일찍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거의 전부였다. 1950년대에는 상기한 「혼인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법규’ 4건을 포함해 총 5건에 그쳤고, 그 내용도 혼인과 이혼에 한정되었다. 이후 중국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1960~1970년대에는 ‘행정법규’를 포함해 가족 관련 입법이 1건도 없다. 가족 관련 입법이 다시 나타난 것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였다. 기본법으로서는 혼인 관련 법률이 198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한 차례씩 개정되었고, 수양, 생육, 양로, 부양에 관한 법률은 모두 199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행정법규’도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제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시기별 특성을 갖는 가족 관련 주요 법률을 혼인법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은 혼인과 가정에 관련된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어, 가족 관련 법률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1954년 헌법 제정 이전 임시헌법 구실을 했던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華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에 기초하여,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을 공포하였다. 1950년 4월 13일, 중앙인민정부 법제위원회 주임위원 陳紹禹가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7차 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기초 경과와 기초 이유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였고, 당일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이 해당 회의를 통과하였다. 같은 해 4월 30일 중앙인민정부는 주석 모택동 명의로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의 공포와 시행에 관한 명령」을 공포하고, 혼인법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공포일로부터 기존에 ‘해방구’에서 반포한 혼인·가족문제와 관련된 모든 조례와 법령은 폐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중국공산당 중앙 부녀운동위원회와 중국공산당 중앙법률위원회는 1948년 겨울에 혼인법 초안을 기초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法制委員會와 全國民主婦女聯合會 및 기타 유관 기관 대표가 참가한 연석회의에서 원칙을 정하였고, 政務院 政治法律委員會 제4차 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후, 정무원 제22차 회의의 토론을 거쳐, 毛澤東이 주재하고 중앙인민정부위원회 부주석, 위원, 정무원 총리, 부총리와 위원 및 政協 全國委員會 상무위원이 참가하는 연석 간담회에서 두 차례 토론하였다. 이밖에도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모든 유관기관이 혼인법을 기초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혼인법은 모든 유관 기관과 인사들이 힘을 모아 만든 것이었다.

혼인법은 原則, 結婚,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혼, 이혼 후 자녀의 부양과 교육, 이혼 후 재산과 생활, 附則 등 8章 26조로 구성되어 있다. 혼인법은 1930~40년대 중화소비에트 계

열의 혼인·가족 관련 법률을 계승하여, 혼인 및 이혼의 완전 자유, 축첩, 매매혼 등 혼인 폐습의 금지, 남녀평등 및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 부녀자와 자녀 보호 등의 지향을 담고 있다.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이 종말을 고하고,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屆3中全會를 거치면서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1950년 혼인법이 시행된 지도 30년이나 되어 혼인 및 가정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축첩이나 민며느리 같은 폐습은 기본적으로 이미 없어졌고, 남존여비와 과부의 재혼 간섭 등의 현상 또한 1960~70년대에 주요한 경향이 아니었다.¹⁰⁾ 게다가 1978년 3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 제정되어, 남녀평등, 혼인의 자주, 모성 및 아동 보호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1980년 ‘혼인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9월 8일 새로운 ‘혼인법’이 第5屆 全國人民代表大會 第3次 會議를 통과하였고, 1981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하였다. 總則, 結婚, 家庭關係, 離婚, 附則 등 5章 37條로 구성되었다.

1980년의 ‘혼인법’에서는, 혼인 연령과 같이 사회 상황에 맞지 않는 조항을 고치고, 혼인 자유, 일부일처, 여성과 자녀의 합법 권익 보호, 강제 혼인과 중복 혼인의 금지와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축첩의 금지와 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삭제했으며, 노인 합법 권익의 보호와 ‘산아 제한(計劃生育)’ 규정을 보충하였다.

개혁개방과 함께 1980년의 혼인법이 제정된 이래 20년 동안, 중국의 사회 구조와 관념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고, 사유재산제의 부분적 도입과 빈부 격차의 확대 등과 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혼인·가족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2000년에 혼인법 수정안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고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1년 4월 28일, 第9

10) 徐安琪, 「婚姻法修改: 社會轉型的晴雨表」, 『中國青年報』 2001.6.1.

屆 全國人民代表大會 第21次 常務委員會에서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修正에 관한 決定」이 통과되었고, 같은 날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總則, 結婚, 家庭關係, 離婚, 구조 조치와 법률 책임, 附則 등 6章 51條로 구성되었다.

2001년 수정 혼인법은 내용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가정 폭력의 금지 조항을 추가했고, 부부 간의 충실 의무와 가정 화목을 강조했는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기혼 남녀의 부정행위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혼인의 무효와 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함께 규정했다. 셋째, 복잡해진 재산 관계를 고려하여, 부부재산제를 대폭 수정·보완했다. 넷째, 이혼 후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이혼 사유 등에 관한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다섯째, 가정 폭력과 학대에 대한 행정 처벌, 가정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과실이 있는 이혼에 대한 손해 배상,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재산 도피에 대한 처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모두 복잡해진 혼인·가족관계에 대한 대응이었다.¹¹⁾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은 혼인에 관한 입법을 중시하였다. 1950년 4월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이 공포된 이후 혼인, 이혼 등과 관련된 행정법규, 사법해석 등이 이어짐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가족의 형성 및 운영에 관한 새로운 법제도와 규범이 마련되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가족 관련 법률은 당시의 역동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의 점진적 해체에 따라 가족세대의 유지 및 운영과 관련된 생육, 양로, 부양 등의 법과 규범이 시장 체제에 걸맞게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11) 김지수, 『중국의 혼인법과 계승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85~86쪽.

본 자료집은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법률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역동적인 ‘가족법’의 전개에 대한 기초자료를 망라해 제공하였다.

2) 자료집의 구성과 분류

본 자료집에 수록된 법령 자료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정된 가족 관련 법령을 망라하였다. 내용상으로는 가족의 형성, 운영, 계승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자 했다. 우선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인과 이혼, 수양 등에 관련된 법령을 포함하였고, 또한 가족의 운영과 세대 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생육, 양로, 부양 등에 관련된 법령에도 주목하였다. 가족의 계승(상속) 관련 법령도 포괄하였다. 법령이 수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망라하고자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점차 법률체계가 안정적 형태를 갖추어 나간 점을 고려하여, 기본 법률과 행정법규, 사법해석, 부문규장, 단체규정 등을 포함하였다. 행정법규는 기본 법률의 시행 절차, 실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해석은 확정된 중요 판결이나 민감한 문제에 대한 판례를 필요에 따라 정리하여 특별히 공포한 사법부의 판결 관련 원칙이다. 부문규장과 단체규정에는 정부 각 부서나 단체의 가족 관련 의견이나 통지 등을 모아 놓았다. 이상과 같은 4종의 법령이면 모든 종류의 법령을 포함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법령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사법해석, 부문규장 및 단체규정 순으로 배열하였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들의 주제별/종류별 분포는 아래 표-1과 같다.

자료의 수집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 공식 홈페이지(<http://www.gov.cn/flfg/>)의 법률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관련 문헌 및

온라인 자료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수집된 법률 모두에 공포 기관, 공포일자, 시행일자, 유효구분, 법규종류의 정보를 수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해당하는 수집 법률은 전문수록을 기본으로 하였고 총론 부분의 헌법에 한해 가족 관련 조항을 절록하여 정리하였다. 시기를 크게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편집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전체적인 법령의 건수나 종류별 건수가 시기에 따라 지나치게 편중되어 포기하였다.

표-1 주제별/종류별 수록 법령 건수

구분	법률	행정법규	사법해석	부문규장	합계
가족의 구성 - 혼인	3	10	14	8	35
- 이혼	0	2	38	2	42
- 수양	2	6	4	0	12
가족의 운영 - 생육	1	9	2	22	34
- 양로	1	18	2	9	30
- 부양	1	2	11	16	30
가족의 계승	1	0	16	2	19
합계	9	47	87	59	202

※ 총론의 헌법은 제외함.

수록된 법령 자료의 제정 시기별 분포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 아래 표-2에서 보듯이, 가족 관련 기본 법률의 제정은 1950년에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1건이 이루어졌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1건도 없으며, 나머지 법률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00년대에 걸쳐 제정되었다. 유일하게 혼인 관련 법률이 1950년대에 제정되었고, 수양, 생육, 양로, 부양, 계승 관련 법률은 개혁개방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규범, 부문규장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말하자면 수양, 생육, 양로, 부양 등 사회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짙은 분야는 사실상 ‘개혁개방’ 이후에나 중국 당국의 시야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3은 본 자료집에 수록된 법령을 (성격과 위계에 따른) 종류별 및 시기별로 분석한 것이다. 1950~70년대는 사법해석 위주로 가족법체계가 운영되다가, ‘개혁개방’ 이후에는 점차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등이 갖추어지면서 사법해석의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체계가 정비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표-2 기본 법률의 주제별/시기별 분포

구분	1950년대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가족의 구성 - 혼인	1	-	1	-	1
- 이혼	-	-	-	-	-
- 수양	-	-	-	2	-
가족의 운영 - 생육	-	-	-	-	1
- 양로	-	-	-	1	-
- 부양	-	-	-	-	1
가족의 계승	-	-	1	-	-
합계	1	-	2	3	3

* 총론의 헌법은 제외함.

* 1980년대는 1978년 이후를 포함하고 있음.

표-3 수록 법령의 종류별/시기별 분포

구분	1950년대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기본법률	1	-	2	3	3
행정법규	4	-	8	21	14
사법해석	29	13	27	12	6
부문/단체규장	5	3	8	12	31
합계	39	16	45	48	54

* 총론의 헌법은 제외함.

* 1980년대는 1978년 이후를 포함하고 있음.

3. 『中國宗族資料選集：族譜資料를 중심으로』

1) 종족제도의 역사적 변천

종법제도는 西周時代에 존재했던 다양한 계층의 同姓 가족을 大宗과 小宗으로 구분하여 그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던 제도였다. 이때는 周 왕실의 政權과 종족의 族權이 일치되어 있었다. 종족은 혈연관계를 유대로 결합된 엄밀한 사회조직이었고 종족은 宗子를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영위했다. 이러한 종법제도는 춘추전국시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여 상품경제의 발전과 빈번한 인구의 유동으로 인해 혈연관계가 차츰 이완되었다. 이후 전국시대와 兩漢代에 걸쳐 수백 년 동안 政權과 族權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後漢 정권의 豪族化와 世家大族의 종족제도가 점차 형성되면서 다시 政權과 族權이 결합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특히 魏晉南北朝時期에는 世家大族의 종족조직이 시종 문벌사족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더 공고히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종족의 경제, 정치적 존립 기반이었던 장원제도가 붕괴되면서 문벌귀족이 쇠망하고 종족조직은 철저히 와해되었다. 더욱이 당송변혁기의 상품경제의 급

속한 발전은 세가대족의 내부구조와 종족관념을 뒤흔들어 종족의 분화가 가속화 되었다.

宋代 이후 점진적으로 형성된 종족제도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종족제도였다. 宋代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추고자 했고 그 중앙집권적 체제를 뒷받침한 기층 단위는 개별소농이었다. 당시 상품경제 발전의 여파로 인해 지주계층 내부에도 극심한 분화가 나타나 일부 지주의 지위는 상당히 불안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부귀를 자손 대대로 전하기 위해 지주관료들은 종족의 분해와 자손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종족제도를 모색하게 되었다. 국가권력도 가족제도의 재건을 통해 국가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송대 성리학자들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朱子(朱熹)였다.

특히 朱子가 제창한 새로운 종족제도는 엄밀한 조직과 엄격한 법도를 갖추고 족장의 통솔 하에 가법과 族規에 규정된 규범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모든 종족은 각기 사당을 세우고 조, 증조, 조부, 친부에 이르는 4대의 신주를 모시고 족전을 설치하게 되었다. 주자가 제시한 사당, 족전, 제사, 가법, 족장, 가례 등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그대로 체현되어 宋代 이후의 전형적인 중국 전통 종족제도의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종족제도는 지배계층에게는 안정된 봉건지배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국가권력에게는 중앙집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초를 확립한다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권력도 이에 대한 지지와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明代는 종족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향약의 보급으로 종족의 조직화가 가속화되었고 이를 통해 종족조직은 점차 自治化되고 정치화되었다. 더욱이 명대 중기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변

화에 따라 향촌조직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里甲은 징세를, 향약은 교화를, 保甲은 치안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명대 후기 종족제도의 강화는 족보 편찬의 유행으로 나타났고 특히 죽인을 교화하는 유가적 윤리가 제창되었다. 청대에 이르면 종족제도는 더욱 발전하여 사당, 제사제도를 비롯하여 族長, 族田, 族譜, 族學 제도에 이르기까지 전대에 비해 종족제도의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종족은 죽인을 구휼하고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폭력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므로 지역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지배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청조는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접지배를 관철하기 위해 종족에 대해 적절한 통제와 타협을 시도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즉 국가권력은 종족이 사회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충군이념을 죽인들에게 교화시키도록 하는 한편, 족장에게 종족 내의 막강한 권력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죽인을 규율하도록 했던 것이다. 명대의 향촌사회에서 향약의 보급에 종족을 활용했던 것이나 청조가 종족을 통해 보갑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통제하고자 했던 것도 모두 국가권력이 종족을 이용하여 직접 기층사회를 통제하고자 했던 예이다.

19세기 후반 이후 중국의 종족은 당시 중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종족은 스스로의 살길을 도모하며 근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기도 했다. 사당을 짓고 자치를 하고 교육진흥을 하여 종족 성원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종족제도의 모습은 남아 있었지만 그 전통적인 교화의 기능은 쇠퇴하고 사회기능이 강화되는 면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격동과 파란의 혁명시기를 거치면서 종족은 자취를 감춘 듯 보였다. 특히 1949년 이후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종족은 근본적으로 부정되었다. 종족의 공동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고 종족의 시설은 공공시설로 전환되었으며 조상에 대한 제사와 의례는 미신행위로 금지되었다. 이는 국가권력이 종족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켜 국가에 종속시키기 위한 조치였다.¹²⁾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이전의 민간의 전통이 부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祖先 숭배와 종족조직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종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민간사회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 족보를 편찬하고 사당을 중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향촌사회의 자치에서도 종족의 역할과 기능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종족관념이 살아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사회와 역사를 진정 이해하려면 중국사회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는 ‘종족’이라는 요소는 간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

2) 宗族과 族譜

일반적으로 사당, 족보, 족산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족제도는 宋代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종족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종족이 민간사회까지 보편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종족제도는 宋代 이전의 世家大族 중심의 宗法的 종족제도와 구별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었고 중국 종족제도의 원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종족제도 중 이 세 요소의 의미와 역할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당은 종족의 상징으로서 收族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2) 馮爾康, 「20世紀上半叶變異中的家族形態和類型」, 『天津社會科學』 2001年 第5期, 136~139쪽. 참조

사당은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며 가족활동의 중심지이다. 종족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의 조상에 제사한다는 사실은 조상에 대한 尊崇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후손에게는 동일 종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작용을 했다. 따라서 이는 곧 종족이 모이고 단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사당은 제사만 지내는 곳이 아니라 종족의 집합장소이며 족장이 家法에 따라 종족을 통치하던 종족활동의 중심지였다. 예를 들어 사당은 족장이 죽은 이들에게 봉건예법을 강연하는 학습장소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죽은 이들은 봉건 윤리도덕과 가족법규를 익히고 가족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규범을 습득했다. 뿐만 아니라 사당은 죽은 이들의 위법 행위를 심판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등 종족 법정의 역할도 했다. 따라서 사당의 건립은 종족 조직의 상징이자 종족활동의 장으로써 죽은 이들의 유대를 강화시켜 주었던 것이다.

종족 결집의 계기이면서도 종족을 유지하는 경제적 기반은 族産이었다. 족산은 주로 祭田, 義田, 學田 등 종족 공유 성질의 族田을 의미하지만 상점이나 수공업공장 등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족산의 용도는 우선 제사의 경비나 사당의 보수비용으로 충당했다. 부유한 종족의 경우에는 義學이나 義莊을 설치하여 인재를 배양하고 죽은 이들의 생활을 구휼하기도 했다. 특히 書田과 學田은 族內 士人들의 과거 응시를 지원하기 위한 토지로 실제로 가난한 사인들의 생활보조와 종족들의 향학을 장려하는 기능을 했다. 義田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嫁娶, 喪葬, 구휼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족산은 종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다.

족보의 편찬 역시 종족을 끌어 모으고 종족의 단결을 강화하여 종

족제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족보는 종족의 역사와 종족 구성원의 혈연관계의 親疎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종족이 형성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연관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함으로써 종족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족보 편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족보는 종족 구성원의 친소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되었다. 또한 족보는 족장을 중심으로 족인들에 대한 교육과 처벌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족장이 족인들을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족보의 편찬은 송대 이후 성행했고 明清代에 이르면 민간사회에서조차 족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종족 연구를 위해서는 족보를 일차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종족연구에서 족보가 갖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족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족보는 대개 序와 凡例가 먼저 나오고 姓氏源流, 先世考, 像贊, 恩榮錄, 祠堂, 墳墓, 族産, 族規, 家禮, 世系, 傳記, 仕宦錄, 藝文, 字輩 등이 배치되며 뒷부분의 跋과 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大事記, 譜引, 기타 專題 등이 부가되기도 한다.

姓氏源流와 先世考에서는 주로 종족 성씨의 유래, 시조의 연원, 종족의 이동 경과와 흥망성쇠, 조상의 사적 등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종족의 계통과 원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족장이 종족 구성원에게 종법사상을 교육하는데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종족의 내력과 이동 상황 및 가족 분기의 맥락 등을 기술함으로써 종족의 혈연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었다. 恩榮錄에서는 주로 역대 朝廷으로 받은 높은 관직이나 작위, 포상 등 조상의 영예로운 일들이 기재되어 있어 인물 연구에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族譜에는 祠堂, 墳墓, 族產, 族規, 家禮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다. 祠堂은 그 건립과 重修, 規模, 位置 등이 기재되어 있다. 분묘는 조상의 묘지 위치를 지도로 작성하여 수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묘지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족산, 족전 등의 위치와 방위를 나타내는 지형도와 각종 토지 계약증서도 족보에서 일정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종족의 경제생활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冠婚喪祭에 관한 家禮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민속학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족보에는 종족이 형성된 이래 종족 내에서 제정한 각종 가족법규와 가훈, 그리고 조상이 자손에게 훈계한 언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대부분 족인들의 일상의 규범이나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적극적으로 체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손들이 족보를 읽으면서 쉽게 가족법규를 익히도록 하고 족인들이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족장의 가족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世系와 世錄은 족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世系는 대개 도표와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 구성원 중 남자의 이름, 위 및 자호, 생몰 연월일과 장지, 배우자의 성씨 및 생몰 연월일, 자녀의 숫자와 아들의 이름, 며느리의 출신지와 성씨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 밖에 傳記와 仕宦錄은 주로 족인들의 事跡, 科擧, 任職 등의 정황을 기재하고 있어 역시 인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족인 중 文人의 文章, 詩, 詞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문예 연구에도 유용하다. 勝跡錄에는 종족 거주 지역의 山水, 亭, 台, 樓, 閣, 橋梁 등 다양한 名勝古跡을 기록해 놓기도 했다.

이러한 종족의 생생한 역사 기록은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종족을

구성하는 인적, 물적 요소의 변화를 수반했다. 따라서 족보의 수정이 불가피했는데 족보는 대체로 30년 정도에 한 차례씩 수정되었다.

이상, 족보 자료에는 종족에 관한 다양하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족보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3) 자료집의 구성과 체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사회 경제 발전과 함께 대만, 홍콩 및 세계 각지의 종친들의 뿌리 찾기 열풍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족보의 편찬이 유행했고 족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도서관에 지방지 및 家譜文獻 센터가 설립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985년에는 第一國家檔案館, 第二國家檔案館, 南開大學 역사학과,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中國家譜綜合目錄』을 완성하여 공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1996년 상해도서관에 ‘家譜閱覽室’이 개관되었다. 2000년 11월에는 중국, 미국 등 25家の 家譜 소장 연구기관들이 상해도서관에서 회의를 열고 『中國家譜總目』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출판된 이 목록집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세계적 규모의 중국 족보 목록집이다. 여기에는 중국 국내외 장서기관 및 민간에 흩어져 있는, 한자로 간행된 중국 각 민족의 譜牒文(家乘, 族譜, 世譜, 支譜, 房譜, 宗譜, 統譜, 總譜, 通譜, 家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족보 목록집들은 종족연구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본 자료집의 자료수집과 정리과정에서도 도움을 얻었다.

본 자료집의 구성과 체제는 다음과 같다. 본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족보자료는 시기적으로는 주로 청대와 민국시기에 편찬되었거나 수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어떤 족보는 근 10년 동안 계속 수정되고

있는 것도 있다. 자료의 선별 범위는 주로 安徽, 福建, 廣東, 湖南, 湖北, 山西 등 종족자료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省을 위주로 했다. 특히 남방지역을 중심으로 했다. 북방지역의 족보자료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碑文이나 인물의 傳記 등을 이용하기도 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는 대부분 족보 중에서 선별한 것들이고 일부는 묘지명의 碑刻이나 가훈 등에서 선별했는데 그 비중은 크지 않다.

본 자료집의 자료는 주로 上海圖書館, 北京圖書館, 國家清史編纂資料中心, 國家圖書館 등이 정리해 편찬한 족보를 주로 활용했고 中國族譜網에서 구입한 족보 자료도 일부 참고했다. 이밖에 직접 수집한 원시 족보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본 자료집은 족보 속의 다양한 내용을 크게 ‘종족의 내부관리’, ‘종족과 사회’, ‘종족 인물’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제1부 ‘종족의 내부관리’에서는 ‘종족의 변천’, ‘종족의 제사’, ‘종족의 족보 編修’, ‘종족의 족규’, ‘족산의 관리’로 주제를 나누었다. ‘종족의 변천’에서는 가족의 기원과 분기, 이동 등의 종족 변천과정을 수록했다. ‘종족의 제사’에서는 종사의 修建, 제사의 시기, 의식과정 및 종족 성원의 기부 등을 수록했다. ‘종족의 족보 編修’에서는 족보 편찬의 연유, 족보 편찬 과정에서의 사회역량 혹은 종족 성원의 참여, 修譜의 종족에 대한 의의, 족보의 범례 표준 등을 수록했다. ‘종족의 족규’에서는 종족의 族規나 家規 등 가족 성원의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 등을 수록했다. ‘족산 관리’에서는 토지, 租佃, 수입의 분배, 재산증식 관리 등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했다.

제 2부 ‘종족과 사회’에서는 ‘종족과 鄉規鄉例’, ‘종족의 갈등 조정’, ‘종족 성원간의 協助’, ‘종족과 교육’, ‘종족과 사회공익’, ‘기타’의 주제로 나누었다. ‘종족과 鄉規鄉例’에서는 각종 민간 활동 등 국가 차원의 규정이 아닌 종족의 비공식제도에 의해 인민의 일상을 제약하는 鄉規鄉

例 자료를 수록했다. ‘종족의 갈등 조정’에서는 종족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분규 및 그에 대한 해결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했다. ‘종족 성원간의 협조’에서는 종족 내부 성원간의 상호 협조 혹은 원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했다. ‘종족과 교육’에서는 종족 내 자녀 교육, 학업, 考試, 문학적 성취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종족과 사회공익’에서는 종족의 사회 기부, 구제, 구휼 등 종족의 각종 사회 공익활동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기타’에서는 이상의 분류에 속하지 않고 잡다하고 소소하지만 종족 관련 내용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수록했다.

제3부에서는 방대한 족보 내의 인물 관련 자료를 모아 놓았다.

원래 계획은 ‘종족과 상업’이라는 대주제도 다루려고 했지만 자료의 수집과 정리과정에서 족보에 기재된 상업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단편적임을 알게 되었다. 전통시기 중국사회에서 상업은 土農工商의 말단이었기 때문에 상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따라서 족보에 상업 관련 사항이 거의 기재되지 못했다. 단지 ‘義擧’ 부분에서 어떤 族人이 ‘일찍이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정도로만 기재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상업 부분은 따로 章을 설정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흡수시켰다.

족보자료는 각각의 족보마다 체제가 서로 달라 주제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을 통일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족보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 주제별로 절록하여 정리, 수록 하다 보니 전체 족보의 완결성이나 연속성이 깨지게 되었다. 주제별로 자료를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종족 연구에서 편리함과 유용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런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집 끝에 부록을 삽입하여 대표성을 가진 종족의 족보 전체를 실어 비교 자료로 삼고자 했다. 부록에 실린 두 편의 족보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어렵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출판된 적이 없는 그

야말로 원시적인 족보이다. 그만큼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Ⅲ. 맺음말 : 자료집 편찬의 의의

이상에서 언급한 『中國家族法令資料集：清代，中華民國時期』, 『中國家族法令資料集：中華人民共和國』, 『中國宗族資料選集：族譜資料를 중심으로』 3종의 자료집이 가진 나름의 특징과 의의를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가족·종족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청대부터 중화민국시기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제정 반포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족 관련 법령을 선별하여 한 곳에 모아 놓았다. 이를 통해 가족 내의 구조, 가족 구성원의 상호관계, 가족과 국가, 사회와 국가의 관계 등 중국의 가족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 관련 법령을 단순하게 수집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몇 차례의 분류를 통해 세분화하여 제시했다. 우선 각 주제에 해당하는 법령은 입법의 주체가 되는 정부별로 분류했고 그 속에서 가족 내에서 가족의 기능과 구조에 따라 몇 개의 주제로 세분화했다. 법의 위계질서도 고려했을 뿐 아니라 법령을 시기 순서로 배열함에 따라 가족 관련 법령의 역사적 변천과정의 추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청대부분에서 전국적인 성격의 법률만을 중심으로 수집 정리하다보니 가족과 관련해서 지방의 다양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들을 갖추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망라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갖고 있던 기본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의 가족 관련 법령을 망라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시기 가족 법령의 큰 변화추이 내지 윤곽을 보여준다. 상술한 시기별 변화 추이뿐만 아니라 내용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기도 매우 유리하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시기 가족의 형태, 가족 성격의 변화, 가족을 둘러싼 국가권력의 지향 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함에도 국내의 연구가 부진하다. 이처럼 법령의 내용과 전체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집이 나오에 따라, 다소간 이 주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법령의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착수에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서대학 진상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편찬한 ‘종족자료집’도 종족에 대한 자료를 한데 모아 분류하고 정리했다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중국 국내외적으로 선례가 없는 일이다. 중국에서 일부 大姓 가족의 족보를 정리하여 영인 출판한 적은 있지만 수록된 종족이 대표성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현재 중국 종족 관련 자료의 정리와 연구는 아직 완전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작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조직이나 어느 소수가 개인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자료집은 종족 관련 내용을 총망라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종족의 전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중국사회사 특히 근대 종족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족은 중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통시기 종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여 연구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종족이 쇠락한 근대 이

후 종족의 실태를 보여주는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연구의 깊이도 비교적 규모가 큰 종족이나 명망 있는 종족에 대한 개별연구에 그치고 있다. 본 자료집은 중국 사회의 구성과 변화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열 수 있도록 주제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집의 출판은 종족자료에 대한 의미 있고 유익한 실험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사유방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족보 자료의 발굴로 중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넷째, 상기한 3권의 자료집이 공통적으로 갖는 또 하나 실질적 가치는 검색 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원문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전자책으로 출판됨에 따라 키워드 검색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료집의 원문이 다른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인천대학교 인문한국(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 디지털아카이브(<http://hka.incheon.ac.kr/>)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사실 수록할 자료를 찾고, 선정하고, 배열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으나, 선정한 자료를 텍스트로 입력하고 이를 거듭 교정하는 작업도 세심함과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지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굳이 원문을 텍스트 형태로 입력한 것은 키워드 검색이 관련 연구 작업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중국, 가족, 종족, 관행, 청대(清代),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법령, 족보, 자료집

(논문투고 : 2012.5.20/ 논문심사완료 : 2012.5.31/ 논문게재 확정일 : 2012.6.3)

참고문헌

1. 자료집 3종

- 인천대 인문한국(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 편, 『中國家族法令資料集: 清代, 中華民國時期』, 도서출판 모두의 지혜, 2012.5.20.
- 인천대 인문한국(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 편, 『中國家族法令資料集: 中華人民共和國』, 도서출판 모두의 지혜, 2012.5.10.
- 인천대 인문한국(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 편, 『中國宗族資料選集: 族譜資料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모두의 지혜, 2012.5.2.

2. 자료집에서 활용한 원본 자료

- 上海大學法學院/上海市政法管理幹部學院 編, 張榮錚/劉勇強/金懋初 点校, 『大清律例』, 天津古籍出版社, 1995.
- 『清會典事例』, 中華書局, 1991.
- 『戶部則例(同治13年校刊本)』
- 懷效鋒 主編, 李俊/王志華/王爲東/点校, 『清末法制變革史料(下卷)』,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0.
- 楊立新 點校, 『大清民律草案 民國民律草案』, 吉林人民出版社, 2002.
- 國府法制局 纂擬, 『親屬法草案』, 編者刊, 1928.
- 國府法制局 纂擬, 『繼承法草案』, 編者刊, 1928.
-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全100冊)』, 黃山書社, 1999.
- 『中華民國法規大全(全5冊)』, 商務印書館, 1936.
- 楊立新 點校, 『大清民律草案 民國民律草案』, 吉林人民出版社, 2002.

韓延龍/常兆儒 編, 『中國新民主主義革命時期根據地法制文獻選編(第四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中國婦女管理幹部學院 編, 『中國婦女運動文獻資料匯編(1918-1949)』, 中國婦女出版社, 1987.

中國第二曆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彙編(第5輯第1編) 文化』, 江蘇古籍出版社, 1994.

『中華人民共和國資治法典』, 清華大學出版社, 2002.

中國法院网法律文庫 <http://www.chinacourt.org/flwk/>

法律圖書館 <http://www.law-lib.com/law/>

中國知网之法律圖書館 <http://law.cnki.net/>

法律教育网 <http://www.chinalawedu.com/falvfagui/>

百度法律 <http://law.baidu.com/>

法律之星 <http://law.law-star.com/html/lawsearch.htm>

3. 논문 및 저서

江慧, 「出世和入世:論家族和宗族的概念」, 『上海大學學報(社會科學版)』 14-4, 2007.7.

김지수, 『중국의 혼인법과 계승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박경석, 「20세기 전반 중국의 혼인문제를 둘러싼 법과 현실 : 1950년 ‘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의 제정과 시행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제52집, 2011.12.

徐安琪, 「婚姻法修改 : 社會轉型的晴雨表」, 『中國青年報』 2001.6.1.

전인갑, 장정아,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 시론적 접근」,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8집, 2010.12.

馮爾康, 「20世紀上半葉變異中的家族形態和類型」, 『天津社會科學』

2001年 第5期.

馮爾康, 『18世紀以來中國家族的現代轉向』, 上海人民出版社, 2005.

肖愛樹, 『20世紀中國婚姻制度研究』, 知識產權, 2005.

張希坡, 『中國婚姻立法史』, 人民出版社, 2003.

謝振民 編著, 『中華民國立法史 下冊』,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0.

Development and Transition of Chinese Family Practices

: Significance and Compilation of Chinese Family Source Book

Park, Kyung-suk · Song, Yoo-who · Son, Seung-hee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ompilation process and significance of three books of Chinese family source book that the HK(Humanity Korea) Research Center for Chinese Practices,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of University of Incheon compiled. First source book is a collection of laws related to family in the Qing Dynasty and the Republic of China, and second is a collection of family law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st of source books is to collect the race-related data set focusing on the Chinese Genealogies material.

To recap the significance of the compilation of kit are as follows:

First, these source books have provided baseline data to enable the empirical studies about Chinese families and tribes for a variety of issues. Famil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collected, as well as several broken down by category was presented.

Secon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oday by cover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family, the family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eriod shows the outline of the major changes or trends. On this topic in academia are expected to spark interest. As well as, by providing the text of legislation to undertake practical research would be helpful.

Third, "Ethnic Source Book" co-edited with Shanxi University that put together a race classification for the data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This is unprecedented in China and abroad. In addition, this source book is helping to improv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Chinese society and history through the excavation of new genealogy materials.

Finally, the real value of these source books is to provide original text in the form of a searchable text. As e-book publishing, these source books are free keyword search, as well as the original text is provided in the digital archive(<http://hka.incheon.ac.kr/>) of the HK Research Center for Chinese Practices,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of University of Incheon.

Key Words : China, Family, Lineage, Practices, Qing Dynasty, Republic of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Laws and Regulations, Chinese Genealogy, Source Book